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

리야드한국학교

제 1조(목적) 이 규칙은 초.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야드한국학교(이하'학교'라 한다)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징수 금액) 학교의 수업료, 입학금 등 각종 납부금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
제 3조(수업료.입학금의 면제.감액)

①학교장은 교원 자녀(강사 포함)의 수업료(입학금, 학교버스 이용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업료)를 감액(현지채용교사 및 시간강사 50%, 시간 강사 75%)할 수 있다. 단,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변동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
②학교 휴업이 부득이하게 15이상 할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.

③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 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④한 가정에서 2자녀 이상 재학할 경우, 둘째 자녀부터 수업료를 50% 감면한다.(단, 버스 이용료, 입학금, 기타 수익자 부담금은 제외).

제 4조(징수 방법)

①수업료는 학기제로 나누어 징수한다.

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.

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,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

④한 가정에서 2자녀 이상 재학시에는 둘째 자녀부터 수업료를 50% 감면한다. (다만 부모의 회사에서 수업료를 지원받지 못하고, 담임선생님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추천할 경우 다시 30%를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.)

⑤수업료는 수업일 당 80리얄로 한다.

제 5조(징수 기일) 수업료의 징수 기일은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전으로 한다.

제 6조(수업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구분하여 반환한다.

①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사우디 내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.

③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에 의거 수업일수의 1/3 미만일 경우 전출하는 달 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수업료를 반환하고, 1/3초과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.

제 7조(기타 사항) 본 규칙에 예시되지 않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
2. 2014년 1월 17일 1차 개정을 함
3. 2015년 3월 1일 2차 개정을 함
4. 2018년 11월 22일 3차 개정을 함
5. 2020년 12월 24일 4차 개정을 함
6. 2022년 2월 13일 5차 개정을 함
7. 2023년 3월 16일 6차 개정을 함
8. 2024년 4월 25일 7차 개정을 함
9. 2025년 1월 29일 8차 개정을 함